

#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남 창 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

국가는 건설업 종사자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건설업 사업자 및 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였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위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